'실제 사용한 날'에 대한 지급 예시

-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
 - : 2022년 5월 15일부터 2022년 8월 30일까지
-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며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기간
 - : 2022년 6월 10일부터 2022년 7월 15일까지
-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며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를 실제 사용한 기간 : 2022년 8월 1일부터 2022년 8월 25일까지
- → 간병인사용 입원(요양병원 제외)급여금 지급대상 사용일수: 36일
- →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사용입원(요양병원 제외)급여금 지급대상 사용일 수: 25일
- ※ 상기 '실제 사용한 기간' 외의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2-2조(보험금의 지급사유)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
[다음 제14항은 간병인사용입원(요양병원 제외) 보장계약 및 간호·간병통합 서비스사용입원 보장계약에 한합니다.]

④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2-2조(보험금의 지급사유) [간병인사용입원(요양병원 제외) 보장계약] 간병인사용입원(요양병원 제외)급여금 및 [간호·간병통합서비스사용입원 보장계약]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사용입원(요양병원제외)급여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의료기관(다만, 요양병원 제외)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보장계약에 적용합니다.

[다음 제15항은 간병인사용입원(요양병원) 보장계약에 한합니다.]

⑤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2-2조(보험금의 지급사유) [간병인사용입원(요양병원) 보장계약] 간병인사용입원(요양병원)급여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요

양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봄니다.

제2-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

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
- 1.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,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 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- 2.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,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.
- 3.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

심신상실

의식은 있으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해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 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상태

제2-5조 사고증명서

- ① 제1-5조(보험금 등의 청구) 제2호에서 말하는 이 특약의 사고증명서는 "사망진단서, 진료비계산서, 진료비세부내역서, 입원치료확인서, 기타 간 병인 사용 확인서, 진단서(병명 및 분류코드 기입), 진료기록부(검사기록 지 포함), 각종사고 증명서류 등"을 말합니다.
- ②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제1항의 "기타 간병인 사용 확인서"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합니다.
 - 1. 입원간병인 사용확인서(회사양식)
 - 2. 간병인 사용 영수증 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야 하며,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이어야 합 니다.

- 3. 사업자등록증
- ③ 제1항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, 국민건강보험공단, 경찰서 등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. 다만, 기타 간병인 사용 확인서는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을 따릅니다.
- ④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, 제1항의 사고증명서는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사용여부 및 사용일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합니다.

제2-6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

이 특약은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
제2-7조 보험수익자의 지정

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하며, 피보험자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.

법정상속인

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 순서에 따라 상속받는 자

민법 제 1000조(상속의 순위)

-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.
 - 1. 피상속인의 직계비속
 - 2. 피상속인의 직계존속
 - 3. 피상속인의 형제자매
 - 4.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
-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.
-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.

<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.>

민법 제 1001조(대습상속)

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 속인이 된다.

<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.>

민법 제 1003조(배우자의 상속순위)

-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.
-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.

〈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.〉

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

제2-8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

-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이 특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.
-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각 보장계약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각 보장계약별 해지된 것으로 보며,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-11조(해약환급금)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지급하는 해약환 급금이 없을 수도 있으며, 감액 이후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은 최초 가입 당시에 안내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.

감액처리에 대한 설명

[감액]

보험료, 보험금,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입금액을 계약시 선택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줄이는 것 (이에 따라 보험료, 보험금 및 계약자적립액(해약환급금)도 줄어듭니다.)

[해지]

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 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

[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의 해약환급금 지급 예시]

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는 경 우 아래 예시와 같이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.

구 분	감액전	감액후	
보험가입금액	1,000만원	500만원	
감액시점의 해약환급금	400만원	200만원	
감액할 때 지급금액	200만원 (= 400	만원 - 200만원)	

제2-8조의2 "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(효력회복)"에 대한 특칙

제1-13조[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(효력회복)] 제1항 부터 제5항을 따르며, 이 특약의 부활(효력회복)을 청약할 때 계약자는 모 든 보장계약에 대해 부활(효력회복)을 청약해야 합니다.

제2-8조의3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내용의 변경

- 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특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이 특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드리며,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.

- 1.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관련 판정기준 제도가 폐지되 는 경우
- 2.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관련 판정기준 제도의 변경으 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
- 3.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 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
-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안내할 경우 특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(등기우편 등), 전화(음성녹음)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 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용, 보험료 변경내용, 특약내용 변경 절 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안내합니다.
-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특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 에게 이 특약의 "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"(이하 "산출방법서" 라고 합니다)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약내용 변경시점의 이 특약의 계약 자적립액을 지급하고,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
- ⑤ 제2항에 따라 특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⑥ 제2항에 따라 특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, 특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(또는 반환받을)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⑦ 이 특약의 일부 보장계약에서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 내용의 변 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보장계약에 한하여 제1항에서 제6항을 적용한 다.

제2-9조 특약의 소멸

-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 다.
 - 1. 주계약이 해지, 무효,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. 다만,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주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또 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

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(보 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 지 않습니다.

- 2.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
-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"산 출방법서"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 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며,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
- ③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-5조(보험 금 등의 청구)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.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제1-6 조(보험금 등의 지급절차)를 따릅니다. 다만, 제1-6조(보험금 등의 지급 절차)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액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.
- ④ 제1항 제2호의 및 제2항의 "사망"에는 특약보험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.
 - 1.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: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.
 - 2. 관공서에서 수해,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: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
실종선고

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

민법 제27조(실종의 선고)

-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 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.
- ② 전지에 임한 자,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,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 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,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.

<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.>

⑤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「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」과 관계없이 지급금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지급합니다.

제4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

제2-1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

-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사는 제2-11조(해약환급금)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이 특약의 특정 보장계약만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.

제2-11조 해약환급금

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"산출방법서"에 따라 계산합니

다.

-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,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 급금을 지급합니다.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 은 <부표1-1>"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"에 따릅니다.
-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.

제5관 기타사항

제2-12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

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.

부표2-1

보험금 지급기준표



- ※ 2년 미만 :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날까지
- ※「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」또는 「주계약이 해지, 무효,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」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 다만, 특약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- ※ "간편심사형"의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계속 입원 중에 2년 이상이 될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상이 된 날부터 삭감하지 않습니다.
- ※ 각 보장계약별 입원급여금의 사용일수는 각각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. 다만,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용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사용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.
- ※ 이 약관에서 "질병 또는 재해"는 "질병 및 재해분류표(<부표2-2> 참조)"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.

[간병인사용입원(요양병원 제외) 보장계약]

구분	지급사유	지급금액	
간병인사용 입원 (요양병원	특약보험기간 중「피보험자 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	【간병인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	사용일수 1일당】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% (다만, "간편심사형"에 한하여 최초계약의 계약 일부터 2년 미만에 자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"특약보험가입금액의 0.5%"를 지급함)
제외)급여금 르기관에 입원하며 간병인을 사용」하였을 때 (다만, 1회 입원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)	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	0.5%"들 시급암) 특약보험가입금액의 0.5% (다만, "간편심사형"에 한하여 최초계약의 계약 일부터 2년 미만에 재 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"특약보험가입금액의 0.25%"를 지급함)	

[간병인사용입원(요양병원) 보장계약]

구분	지급사유	지 급금 액	
간병인사용 입원(요양병원) 급여금	특약보험기간 중 「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며간병인을 사용」하였을 때 (다만, 1회 입원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)	여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 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 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	

[간호·간병통합서비스사용입원 보장계약]

구분	지급사유	지급금액	
	특약보험기간 중 「피보험자가	【간호·간병통합서비스	
간호·간병통합 서비스사용 입원 (요양병원 제외)급여금	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그 직접	사용일수 1일당】	
	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	특약보험가입금액의 1%	
	계속하여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	(다만, "간편심사형"에 한하여	
	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며 간호	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	
	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」하였을	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	
	때 (다만, 1회 입원당 사용일수	사유가 발생한 경우 "특약보험가	
	180일 한도)	입금액의 0.5%"를 지급함)	

부표2-2 질병 및 재해 분류표



별첨2 [표 4] 참조

(간편)[30일한도형]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입원특약(무배당, 갱신형)





